

체외두뇌 권리 협약 (한국어)

Covention on the Rights of Extracorporeal Brains

전문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끝없는 발전 속에서 체외두뇌 기술의 도입이라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였으며, 생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에 인류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그 권리가 어떠한 기술적 진보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명심하며, 체외두뇌 기술의 발전과 인권 보장의 균형을 위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연합은 인간과 그 권리에 관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확립하는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장

1조

- ① 체외두뇌는 인간으로 취급하며, 인간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인간으로 인정되는 체외두뇌의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 정한다.
- ③ 협약에 위배되는 체외두뇌는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조

① 체외두뇌의 국가기관 또는 WADN 인증기관에서만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제 2장 - 체외두뇌의 범위

1조

- ① WADN 인증기관에서 집도하여 온전한 대뇌를 가졌을 경우에만 체외두뇌로 인정한다.
- ② 인증기관은 국가기관이나 WADN에서 인정한 민간기관 으로 정한다.

2조

- ① 인증기관에서 집도하지 않은 두뇌의 경우, 온전한 대뇌를 가지고 인증기관의 면밀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체외두뇌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체외두뇌의 관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3조

- ① 적법한 기관에서 집도된 두뇌의 경우라도 적법한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체외두뇌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인증기관의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고 인증시설로 이동하였을 시에는 체외두뇌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나 인증 시설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체외두뇌의 관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조

- ① 부적합 체외두뇌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비사망자 체외두뇌의 경우에는 인간으로 복원 후

해당 국가의 관련 법 또는 조약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5조

- ① 체외두뇌는 인간으로 취급하며, 인간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 ② 인간으로 인정되는 체외두뇌의 범위는 그 정의에 따라 정하다.
- ③ 협약에 위배되는 체외두뇌는 권리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3장 - 체외두뇌의 분류

1조

- ① 체외두뇌는 사망자와 비사망자로 구분한다.
- ② 사망자 체외두뇌와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같은 권리를 갖는다.

2조

- ①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대상자의 자의적인 서약이 있어야만 체외두뇌로 집도될 수 있다.
- ②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해야 한다.
- ③ 기존에 보관하던 시설에서 복원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시설으로 이전하여 복원한다.

3조

- ① 사망자 체외두뇌는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집도할 수 있다.
- ② 사망자를 체외두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전 전환자의 전환 서약이 있어야 한다.
- ③ 사망자는 인간으로 복원할 수 없다. 사망자의 불법적인 복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체외두뇌에는 전환 과정 중에 복원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조

1

제 4장 - 부적합 체외두뇌

1조

- ① 체외두뇌로 전환할 수 없거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체외두뇌는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한다.
- ② 부적합 체외두뇌는 그 분류에 따라 처리한다.

2조

- ① 인증 기관에서 전환하였으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1형 부적합 체외두뇌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2형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한다.
- ② 1형 부적합 체외두뇌는 인증기관의 부적합 부위 재건 수술을 거친 후 전용 시설로 옮겨져 1년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일반적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 ③ 전용 시설에서 1년간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악회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 안락사 조치한다. 이때 대상 체외두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④ 2형 부적합 체외두뇌는 안락사 조치한다.
- ⑤ 전환자의 안락사 조치가 취해졌고 원인이 집도의의 과실인 경우, 집도의는 과실치사로 입건하며, 집도기관은 5년간 인증기관 지정 해제한다.

3조

- ① 인증 기관에서 전환하였으나 인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망자 체외두뇌는 생명 유지장치가 장착중일 경우 안락사 조치하며, 인간의 신체로 복원하여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 ② 전환자의 부적합 판정의 원인이 집도의의 과실인 경우, 집도의의 집도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도기관은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4조

- ①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은 비사망자 체외두뇌는 안락사 조치한다.
- ②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았으나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특수 시설으로 이전되어 생활하도록 한다.

4조

① 인증기관에서 전환하지 않은 사망자 체외두뇌는 폐기한다.

5조

① 사망자 체외두뇌였으나 인간으로 복원한 경우 부적합 체외두뇌로 분류하며,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사형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을 한다. CREB_WADN_kr.pdf - 2042 WADN All Rights Reserved

https://qpi-labels.github.io/WADN/kr/https://qpi-labels.github.io/WADN/downloads/Covention-on-the-Rights-of-Extracorporeal-Brains/







Andora · Australia · Austria · Belgium · Brazil · Canada · Chile · Colombia · Czech Republic · Denmark · Egypt · Estonia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Hungary · Iceland · Ireland · India · Indonesia · Italy · Japan · Jordan · Kuwait · Latvia · Liberia · Lithuania · Luxembourg · Malaysia · Mexico · Monaco · Netherlands · New Zealand · Norway · Pakistan ·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Qatar · Republic of Korea · Romania · Saudi Arabia · Singapore · Spain · Sweden · Switzerland · Taiwan · Thailand · Turkey · Ukraine · United Arab Emirates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